

의안번호	2213735
의 퇴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7.
추 계 번호	25F570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36 (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내국법인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의 10% 세액공제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36 (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에 대한 10% 세액공제를 신설하므로,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
 -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규모(국가보증 한도)는 2025년 10조원으로,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,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정책금융을 설치1)
 -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며, 2025년 9월 기준 누적 6.5조원 지원
 -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4대부문에 중점 지원
 - ※ 4대부문: 첨단전략(이차전지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바이오), 자원안보(핵심광물, 에너지), 경제필수재(식량, 산업원료, 기계장비), 물류·인프라(운송, 비축, 항만)
- 현행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(이하 공급망안정화법)」의 기금 재원은 공급망기금채, 정부 등의 차입금이며 법인의 출연은 허용되지 않음

1) 관계부처합동,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, 2025.10.31.

- 정부 외의 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허용하는 박수영의원안²⁾이 발의되어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「공급망안정화법」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내국법인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허용 범위가 구체화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민간의 출연금 규모 등도 추정해야 하나, 자료의 부재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내국법인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에 대한 10% 세액공제 신설의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

2) 박수영의원 대표발의,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: 2213734)